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을 개정(안 제30조)

나.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4조)

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안 별표 3)

라.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개정(안 별표 19)

마.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장례시설로 명칭 변경(안 별표 6, 7, 10, 12, 14, 15, 17, 18,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개선사항 반영 [기획감사실-8221('17. 9. 8.)]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47762('17. 8.30.)]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17. 9.21.~ '17.10.1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8호 중 “규칙 제3조제2항”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전단 중 “「성주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운영지침」”을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심의 제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을 제한하거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단란주점”을 “같은 호 너목의 제조업소, 단란주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개설 및 확장을 포함한다)인 지역은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①·② (생 략)	제23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주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0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생 략)	제30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신 설>	④ 영 제59조제3항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② (생 략)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심의 제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을 제한하거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 러. (생 략)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같은 호 너목의 제조업소, 단란주점 ---------- 나. ~ 러.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바. (생 략)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장례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마. (생 략)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장례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 ---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 --- 장례시설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 ---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타. (생 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생 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장례시설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거. (생 략)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 장례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개설 및 확장 포함한다)인 지역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삭 제>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삭 제>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삭 제>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생 략)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 --- 장례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관련)	<삭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